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5 - 44 - 196호

안 건 명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
 대표이사 유희훈

의 결 일 2015. 9. 3.

주 문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공급계약 상의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내용을 위 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

로부터 '17.1월까지 매월 말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132,65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I. 일반현황

피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이다.

< 피심인 현황 >

('14. 12월말 기준)

방송상품 가입자수(명)			방송매출액	방송구역
아날로그	디지털	계		
79,459	54,584	134,043	188억원	충북(충주·제천·증평·단양·괴산·음성·진천)

II. 사실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은 피심인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라 한다)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14.1월~'15.5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약서 및 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행위

피심인은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14.12.31., '15년 미체결)에 따라 매 익월 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4년도 126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3,179,780천원 중 253,500천원(8.0%)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2,926,280천원(92.0%) 중 157,850천원(5.0%)은 '14.4~'15.3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고 2,768,430천원(87.1%)은 '15.4월에서야 일괄 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25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제5조) : PP는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SO에게 청구하고, SO는 청구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동 금액을 PP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평균 지연지급기간 = $\Sigma(\text{각 지연지급건별 지연일수}) \div \text{전체 지연지급건수}$

또한 '15년 5월까지 123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1,191,400천원 중 19,600천원(1.6%)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1,171,800천원(98.4%) 중 24,850천원(2.1%)은 '15.3~4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고 1,146,950천원(96.2%)은 '15.7.31~8.7일에 걸쳐 일괄 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14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현황 >

('15. 8. 7일 기준, 단위 : 천원)

SO	연도	대상PP 채널수	평균 지급 기간	총 계약금액(Ⓐ)	총 지연지급액(Ⓑ)	지연지급액 비율 (Ⓑ/Ⓐ)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14년	126	253일	3,179,780	2,926,280	92.0%
	'15년	123	144일	1,191,400	1,171,800	98.4%
합 계		397일		4,371,180	4,098,080	93.8%

* 총 계약금액 중 총 지연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관련

'14.7.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한 피심인 등 7개 SO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이와 관련 피심인은 '14.12월에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였고 '14년 지연지급분(2,926,280천원)에 해당하는 이자 120,722천원^{*}을 '15.4월에 일괄 지급하고 '15년 지연지급분(1,171,800천원)에 해당하는 이자 17,602천원을 조사기간 중인 '15.7.31일과 '15.8.7일에 나눠 지급하였다.

^{*} 피심인은 계약서 변경('14.12월) 이전인 '14.1~11월분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117,380천원)까지 지급함

※ (주)씨씨에스 충북방송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제5.2조) : SO가 정당한 사유 없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할 경우 SO는 PP에게 연 이자율 6%(상법기준)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14.12.31.)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령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관련 법규 >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II.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받으면서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불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였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PP에게 프로그램 공급계약 상의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내용을 PP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업무처리 절차 개선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7.1월까지 매월 말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및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 및 제70조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관련매출액의 2/100로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77,931,357원이다.

나. 기준금액

< ① 관련매출액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관련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흠크 평송출수수료수익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18,896,567,839원이다.

<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

(단위 :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평균
매출액	18,847,342,454	19,014,534,898	18,827,826,164	18,896,567,839

< ② 기준금액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부과기준율은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하는데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대함”으로 판단하되 피심인은 ‘지연지급 금액(4,098,080 천원)’이 총 프로그램 사용료 중 80% 이상으로 많고, ‘지연지급 기간(397일)’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 발생한 점,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로 한 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범위(0.6% 초과 1.2% 이하) 내에서 0.9%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170,069,111원이다.

2. 필수적 가중

필수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14. 3. 1일 최초 개시되어 '15. 8. 7일 종료됨으로써 위반행위 기간은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에 30%를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

추가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20%를 감경하고 조사 착수 이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함으로써 20%를 감경하여 총 40%를 감경한다.

4. 과징금의 결정

이상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은 132,653,906원이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의거 만원 미만에서 절사하여 계산한 최종 과징금은 1 억 3,265만원이다.

VII. 결 론

상기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흥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